

정정 신고 (보고)

2024년 10월 22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년 1월 13일

3. 정정사유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(모든 종류 S 수익증권 정의 변경, 2024.08.01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6. 나. 종류형 구조	아니오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(모든 종류 S 수익증권 정의 변경, 2024.08.01 시행)	[가입자격]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</u>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 (S-P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</u>	[가입자격]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</u>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 (S-P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</u>

			<p><u>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 (S-R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(다만,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적용금은 제외한다)</u></p>	<p>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<u>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 (S-R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(다만,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적용금은 제외한다)</u></p>
아니오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(모든 종류 S 수익증권 정의 변경, 2024.08.01 시행)	<p>[판매경로] 온라인 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[판매경로] 온라인 슈퍼(S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수익증권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(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)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</u></p>	

				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--	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